

[별표 2] 부득이한 사유 심사 기준

사 유	심사 기준
1. 신혼여행, 친족의 경조사 등	친족의 경조사에 사회통념상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재판 출석 등	외국 법령에 따라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병간호	본인의 병간호가 불가피한 경우
4. 질병치료	가.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을 국외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으로 치료가 보다 쉬운 국가에서 질병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위해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6. 경기(전지훈련 포함), 공연(대중문화예술 공연 포함) 등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경우
7. 출장, 회의(학회) 등	가.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출국이 필요한 경우
	나. 보충역으로 장기간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출장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8. 학위 취득, 시험 응시 등	가. 유학생이 해당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 또는 논문심사 등의 과정만 남아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나.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외국의 변호사 또는 의사 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9. 기 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